

#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 우\*

## 예

- I.
- II.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 III. 손해배상청구의 결정사유
- IV. 손해배상의 증명과 배상액
- V. 결론

## 국문초록

및 도로소음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음을 유발하는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해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도로소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분쟁소음측정시점을 소음분쟁 당시가 아닌 아파트분양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소음도 측정횟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음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생활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도로설치가 위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설치 자체를 두고 도로관리를 잘못하여 환경오염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한편 공사장소음의 판단시 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작업회수, 1회 작업시간, 지속시간, 작업간격 등을 수인한도 판단 시 참작하고 있다.

## I.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에 따라 많은 집합건물과 도로 등 기간시설들이 확충되고 있다. 이러한 건물과 시설들이 축조됨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겠지만 그러한 건물의 건축과 시설의 설치 그리고 이용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특히 각종 건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공사장이나 도로의 소음은 해결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이다. 이 공사장과 도로소음에 관한 소송이 전체 환경분쟁 소송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sup>1)</sup>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는 제정된 주요 대도시의 소음지도<sup>2)</sup>에 따라 소음노출인구를 산정하여 소음저감을 위하여 그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 공사장과 도로의 소음은 원인의 불명확성과 다양성,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과실책임주의의 완화 또는 무과실책임의 인정<sup>3)</sup>, 위법성 판단을 위한 수인한도의 초과여부 판단문제, 피해액 산정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의 여지가 많다.

공사장과 도로의 소음에 대하여 사건 당사자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sup>4)</sup> 이 논문에서는 공사장

1) , 환경분쟁조정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1. 3. 31., 1면; 이승우, 법원의 배상책임결정사유와 재정결정방향, 「환경법연구」 제34권 제1호, 2012, 99면 참조.

2) 경향신문 2012년 9월 21일자 사회면. 소음지도는 해당 도시의 인구주택교통량 등에 따른 소음의 변화를 기록한 것으로 일본, 유럽연합(EU),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성되게 되며 소음의 정도를 등급 선이나 색을 이용해 시각화한 지도이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9월 21일 광역시 및 인구 50만 명 이상 4개 도시의 소음지도 제작을 위한 예산 9억 원을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2016년까지 총예산 40억 원을 투입해 인구 50만 명 이상 20여개 도시의 소음지도 제작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판결 등 참조. 환경분쟁 사건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

도로의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그 법적 근거와 법원 판결의 배상책임 결정사유 그리고 손해배상법리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II. 법적 근거

### 1.

#### (1) 근거

공사소음이나 도로소음의 유발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민법 제750조 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도로소음의 경우 자동차가 운행되는 도로를 공작물 또는 영조물로 보고 그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상태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도로의 설치와 관리자인 국가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책임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당사자

공사소음이나 도로소음으로 인한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는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시 공업체나 자동차가 운행되는 도로의 관리자,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를 상대로 손

4) 「2011년도 환경분쟁조정-제도개선 및 우수사례발표 자료」, 2011. 11. 23., 17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 7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총 2,867건을 접수하여 2,416건을 재정(裁定), 조정(調停), 중재합의로 처리하였다. 처리된 사건 중에서 소음·진동에 관련된 사건이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2,070건이고 그 중에서 재정결정은 1,403건이다. 이렇게 효력이 확정된 2,416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2,032건은 합의, 16%에 해당하는 384건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제기 등 미합의 사건이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0년 8월 까지 재정결정된 870건 중 173건이 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소송율이 전체 약 2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법원이 판단한 112건을 분석하면 재정결과와 같은 판결은 80건으로 인용률 71%, 불인용한 판결은 32건으로 불인용률 29%이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성과 증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sup>5)</sup>

(3)

공사소음이나 도로소음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음을 유발하는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그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 초과하는지 여부이다. 수인한도 기준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난이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위법성의 판단기준인 수인한도는 공사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 의하며, 도로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에 의하여 판단한다.

## 2. 의한 손해배상책임

### (1) 청구근거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는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소음과 공사장소음은 환경오염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도로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

5) , 항공기소음관련 민사소송의 제문제, 환경소송의 제문제(이홍훈 대법관 퇴임기념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1, 106면.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과실책임을 규정했었고, 개정법은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제2항에 의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공사소음이나 도로소음으로 인한 소송에 있어서 구 법 하에서 피해자는 피해원인이 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이러한 사업장 등을 사실상, 경제상 지배하는 자인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정법 하에서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요건

구 법 하에서 '사업'이란 영리, 비영리활동을 불문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사업장 등'은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등 사업장, 설비, 자동차 등을, '사업자'는 피해원인이 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이러한 사업장 등을 사실상, 경제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sup>6)</sup> 이 사업자와 개정법 하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의 공사소음이나 도로소음을 유발하는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소음을 유발한 가해자의 과실증명이 용이하므로 과실책임에 의할 수 있으나<sup>7)</sup>, 과실증명이 쉬운 경우에도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sup>8)</sup> 무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sup>9)</sup>.

6) , 공해배상소송에서의 수인한도론과 공용관련 하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3권, 2004, 285면; 장중선, 앞의 논문, 104면.

7) 小澤, 船後政府委員説明, 參議院特別委員會會議錄, 26 , 28頁-29頁.

### Ⅲ. 결정사유

정도를 초과하는 공사소음과 도로소음은 생활방해로 소음의 정도에 따라 수인해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할 때 비로소 위법하게 된다.<sup>10)</sup> 그러므로 공사장과 도로소음도가 기준 이내라면 수인해야 한다.<sup>11)</sup> 이러한 수인할 수 있는 기준 이내의 소음도의 정도를 수인한도라고 한다. 이 수인한도는 피해자가 받는 생활이익의 침해와 가해자의 권리행사의 사회적 타당성을 비교형량하여 상린자 상호간에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며 그 한계를 넘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공사장과 도로소음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sup>12)</sup>

#### 1.

##### (1) 초과

일반적으로 공사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sup>13)</sup>, 공사장 소음의

8) ,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 「公害賠償の理論」, 有斐閣, 增補版, 1978, 167頁.

9) 加藤一郎,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 「現代法 ジャーナル」創刊, 1972, 14頁; 牛山積,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法案要綱の問題點”, 「公害裁判の展開と法理論」, 日本評論社, 1976, 89頁.

10) 박창현,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증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1997, 605면.

11)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岩波書店, 1968. 8, 27頁; 野村好弘,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故意·過失および違法性”, 岩波書店, 1968. 8, 387頁; 淡路剛久, 「公害賠償の理論」, 有斐閣, 1978, 111頁; 澤井裕, 「公害の私法的研究」, 一粒社, 1969, 405頁 以下; 奥田昌道 外編, 「民法學(6)」, 有斐閣, 1975, 81頁 以下.

12)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9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등 참조.

초과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sup>14)</sup> 2010년 6월 30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수음자의 위치에서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에는 60dB(A) 이하, 주간(07:00-18:00)에는 65dB(A) 이하, 야간(22:00-05:00)에는 50dB(A) 이하(2008. 12. 31.까지는 각 65dB(A), 70dB(A), 55dB(A))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넘는 경우를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파작업의 경우 주간에만 +10dB(A)을 보정하고 공휴일에는 -5dB(A)을 기준치에 보정한다.

공사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소음도에 대한 측정이 전제된다. 그 증명이 없는 경우 수인한도의 설정 자체가 곤란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각 거주지에 상당한 크기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도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사시에 높은 소음을 유발하는 공정은 공사 초반에 집중되어 있어서 피해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당해 공정이 끝난 이후이므로 실제 소음도에 대한 측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밀한 감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상당<sup>15)</sup>하여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더욱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정결정의 신청과 심리절차 및 투여되는 시간으로 인하여 증명의 적정시점을 방지할 수 있다.

하급심 관례에 의하면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 법이 규정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천공기,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약 13개월 동안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소음도가 74dB(A)로 측정된 경우 이 공사의 소음을 연속적, 반복적인 충격소음으로 보고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하

13)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등 참조.

14) 도로소음에 관한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등 참조.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8104 사건의 원고는 약 970명이었는데, 감정비로 20,000,000원이 청구되었다. 한편, 위 사건은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16) 한편 6개월 동안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브레이커로 파쇄작업을 한 시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소음측정을 한 결과 73dB(A)로 측정되어 방음시설 설치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된 점 등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였다.<sup>17)</sup>

법원은 건설장비로 6개월-13개월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소음을 5dB(A)에서 10dB(A) 이상 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2) 태양과 정도

공사장에 투입된 기계들은 90dB(A) 이상의 높은 소음(항타기 93.1dB(A), 천공기 95.5dB(A), 브레이커 95.7dB(A))을 발생시킨다.<sup>18)</sup>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수음자의 위치에서 아침, 저녁에는 60dB(A) 이하, 주간에는 65dB(A) 이하, 야간에는 50dB(A) 이하이어야 한다. 최근 하급심 판결인 2008가합72566 판결에 의하면<sup>19)</sup> ① 공사현장에 바위가 많아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발파를 위한 천공작업이 6개월 동안 1일 평균 8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하루 평균 천공 수는 328개로 1회 작업시 지속시간 1분 내지 5분, 작업간의 인터벌은 1분 내지 2분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천공기, 브레이커 등이 사용된 점, ②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천공기, 브레이커는 95.5dB(A) 이상의 충격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 ③ 각 세대는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최대 150m 이내의 거리에 있어 거리감쇠공식에 따를 때 적어도 68dB(A) 이상의 소음이 빈번하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④ 측정된 자료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약 68dB(A)의 소음이 측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위 기간 동안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sup>20)</sup>.

16) 2009. 11. 4. 선고 2009가합58758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115603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17)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나94125 판결.

18)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 2003 참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72566 판결.



사안에서 공사장에 향타기와 브레이크가 주간에 투입되어 파쇄작업이 이루어 졌다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인한도 기준에 따라 당시 소음이 20-25dB(A) 이상 초과하고 있고 설령 소음원으로부터 수음점까지 150m 이격거리를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할 수 있다.

### (3) 사정

2008가합72566 판결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소음의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약 65dB(A) 정도의 소음도가 예측될 수 있는 거리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소음의 거리감쇠 특성을 고려할 때, 약 240m 떨어진 곳의 공사소음의 거리감쇠는 약 30dB(A)로 보고 향타기, 천공기, 브레이커를 사용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으로부터의 거리가 240m 이내인 곳이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시하였다.<sup>21)</sup> 즉 피해자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공사소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러한 거리감쇠 요인 이외의 요인 중 기상 조건,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의 장애물이 있으면 위 추단이 불가능하므로, 위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도달이 예측된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변론시에 소음원으로부터 수음점까지의 이격거리와 그 사이에 장애물 존재여부, 소음을 감쇠시킬 수 있는 기상조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공사소음 판단시 공사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장애물이 존재한다면 소음이 감쇠되므로 거리감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인한도 초과여부는 공사장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4) 소음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06나94125 판결에 의하면 6개월 동안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채

20) 2009. 9. 30. 선고 2007가합63688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나 101420호 항소기각 판결 후 확정); 2010. 1. 20. 선고 2008가합128261 판결; 2010. 2. 5. 선고 2009가합60553 판결.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72566 판결.

파쇄작업을 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소음측정을 한 결과 73dB(A) 측정되어 방음시설 설치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소음피해가 계속된 점 등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였다.<sup>22)</sup> 또한 2007가합 103906 판결에 의하면 5개월 동안 콘크리트 파쇄, 천공작업 등이 진행된 사안에서 소음측정 결과 78dB(A)이 측정되어 방음벽 재설치 처분을 한 점, 그 후에도 74dB(A) 내지 79dB(A)이 측정되어 방음벽 보완설치 처분을 하였음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하였다.<sup>23)</sup> 즉 법원은 수인한도를 초과한 소음 판단시에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등을 설치한 후 공사해야 함을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당시 주간(07:00-18:00)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소음기준에 의해 발생소음이 70dB(A) 이하이어야 하는 바 일정 정도를 초과하였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방음벽 보완설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였으므로 소음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소음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5)

공사장 소음판단시 기본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따라 공사장 소음도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청의 소음방음벽 등의 보완설치 여부 등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제시된 법원의 판결에서 수인한도 초과여부 판단시에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의 횡수, 지속시간, 소음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른 소음감쇠 등을 참작하고 있다. 소음원과 수음점간의 이격거리에 따라서 소음이 감쇠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소음이 더욱 감쇠될 수 있으므로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 공사소음을 일으킨 자는 면책을 위하여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하면 공사소음을 일으킨 자는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방음벽 등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소음이 회절감쇠 되고 장애물로 인한 투과감쇠로 소음도가 수인한도 내임을 항변하여야 한다. 법원

22) 2007. 10. 25. 선고 2006나94125 판결.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7가합103906 판결.

비록 소음기준치를 많이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공사설비의 종류에 따라 소음의 횟수, 지속시간, 소음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른 소음감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 소송은 하급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고 있다.

## 2.

### (1) 객관적 소음도

도로소음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sup>24)</sup> 도로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에 대한 증명책임은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있으며 거주지에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도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도로소음의 한도는 2010년 6월 30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은 주간(06:00-22:00) 68dB(A), 야간(22:00-06:00) 58dB(A)이고 상업지역은 주간(06:00-22:00) 73dB(A), 야간(22:00-06:00) 63dB(A)이다. 이 수인한도 도로소음도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사장 소음도 비하여 아침, 저녁 및 주간의 경우 3-8dB(A), 야간에는 8dB(A) 정도 높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소음도 측정시 건설부 고시가 정한 소음측정기준에 따라야 하는 바 아파트 분양회사가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2004년 3월의 소음도 수치를 이용하였으므로 채무가 부존재하다고 판시하였다.<sup>25)</sup>

**2004가합7135 판결**에 의하면 도로소음을 낮 시간대 및 밤 시간대에 각 1회씩 2회만 측정하였다면 소음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소음측정회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측정시간이 낮 시간대(06:00~22:00)는 차량통행량이 많은 퇴근시간 무렵인 18:22부터 18:45 사이에, 밤 시간대(22:00~06:00)는 취침준비를 위하여 귀가시간을 재측하는 야간시간대인 22:00부터 22:23 사이로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이 소음도측정치는 도로소음도를 판단하기

24)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등 참조.

25) 수원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4가합7135 판결.

객관적인 소음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채무가 부존재하다고 확인하였다.<sup>26)</sup> 도로소음도 측정시 차량통행이 많은 특정시간대의 소음을 기준으로 하거나 소음측정회수가 부족하다면 소음측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그 수치에 의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할 수 없다.

## (2) 및 도로관리 구분

대법원은 **2008 9358 판결**에 의해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그 주택의 건축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의 거주자들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도로소음 때문에 발생한 생활이익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분양회사는 주택의 공급 당시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소음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거나,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서 소음방지시설이나 조치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소음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판시하였다.<sup>27)</sup> 위 사안에서는 주택 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그 소음이 주택 건축으로 인한 소음이 아니므로 주택 거주자의 분양회사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분양회사는 거래상 목적물의 품질에 하자가 있다거나 소음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책임이나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2008가합4126, 4485 판결**로 피신청인 회사는 2003년에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일 뿐 도로의 설치, 관리자가 아니므로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6) 2010. 5. 4. 선고 2009가합18154 판결.

27)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에서 아파트 공급 당시에 위 아파트에 거래상 통상 소음 방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 이후인 2007년 11월 아파트에서 측정된 소음이 주간 58-68dB(A), 야간 51-65dB(A)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회사가 아파트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을 부담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sup>28)</sup> 또한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2008 7337 판결**로 도로의 설치에 원활한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그 도로의 설치가 위법하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설치 자체를 두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것을 감안하면 도로의 적정한 관리에 의하여 비로소 통제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소음에 관하여는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며 “도로의 설치자”와 “도로의 소유자·관리자”를 구분하였다.<sup>29)</sup> 위의 판결에서 보듯이 도로설치자와 관리자를 구분하여 수분양자가 분양자와의 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는 단지 아파트를 분양한 자일 뿐 도로의 설치, 관리자가 아니므로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3) 접근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7470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1969년 4차선으로 개통되었다가 1992년 현재와 같은 8차선의 도로로 확장되었고, 신청인들은 2001년에 아파트에 입주함으로써 실제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한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며 피신청인의 면책을 인정하였다.<sup>30)</sup> 즉 도로소음의 피해자가 소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도로가 개통되고 확장된 이후 입주함으로써 당시 도로소음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서 그 도로소음 피해의 위험이 특

28) 2008. 10. 16. 선고 2008가합4126, 4485 판결.

29) 광주고법 2009. 7. 3. 선고 2008나7337 판결.

30) 수원지방법원 2005. 12. 6. 선고 2004가합7470 판결.

중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결국 아파트입주자는 소음원인 도로가 확장된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소음도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위험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 (4) 세대만 수인한도 초과

\_\_\_\_\_ 2007나5955 판결에 의하면 일부 판결 중 도로소음 측정 결과 총 560세대 중 49세대의 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사실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부 세대가 도로소음기준 이상인 사실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sup>31)</sup>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전체 세대인 총 560세대에 도달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부 세대인 49세대의 소음도에 까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다수 세대가 같은 청구취지로 공동소송으로 도로소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분리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세대에 대해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이미 수인한도를 초과한 도로소음이 있는 일부 세대인 49세대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 (5) 소결

도로소음도 판단시에 도로소음도 측정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소음의 측정시기와 방법 그리고 회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측정시기는 차량통행량이 많아 소음이 심한 퇴근시간대와 같은 일부 특정시간대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는 목적물 분양을 했을 뿐으로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므로 그 주택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소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도로소음과 관련해서 그 소음은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 당시에 도로소음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31)

2007. 10. 23. 선고 2007나5955 판결.

그 위험의 정도를 어느 정도 초과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고 그 아파트 인근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있으므로 인하여 도로소음이 수음점까지 도달한 소음의 중복도 또한 수인한도 판단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다수 세대가 공동소송으로 도로소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지만 그 일부 세대만 소인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부 세대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 IV. 증명과 배상액

##### 1.

##### (1)

##### ( ) 위법성 판단기준

공사소음에 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한 대법원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음 등의 배출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sup>32)</sup>, 수인한도 초과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sup>33)</sup>하고 있다.

##### (나) 증명책임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 초과 증명책임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그의 거주지에 상당한 크기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32)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등 참조.

33)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등 참조.

## ( ) 증명방법 및 정도

공사소음에 대한 피해자의 증명방법은 공사소음의 생활이익의 침해 여부를 실제 소음도 측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공사소음의 경우 높은 소음을 유발하는 공정은 주로 전체 공사 기간 중 기반공사를 하는 초반에 집중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당해 공사공정이 종료되는 즈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초과 소음도에 대한 측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밀한 감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상당하여<sup>34)</sup>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증명정도가 문제된다.

실무상 민원 담당 공무원이 측정한 소음도는 행정처분 판단과 손해배상청구의 주된 자료이다. 다음은 법원이 측정된 소음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2006나94125 판결**에 의하면 6개월 동안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브레이커로 파쇄작업을 한 사안에서 공사소음의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하였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측정한 소음도가 73dB(A)로 방음시설 설치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소음피해가 계속되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sup>35)</sup> 이 항소사건은 당사자들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음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수인한도의 초과가 인정된 사건들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95 판결**에 의하여 옹벽 바로 밑에서 6개월 동안 터파기 공사, 골조공사 등 진행된 사건<sup>36)</sup>에서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최고 76dB(A), 골조공사 과정에서 최고 74dB(A) 각 측정된 점을 고려하여 수인한도의 초과가 인정되었고<sup>37)</sup>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3906 판결**에 의하여 5개월 동안 콘크리트 파쇄, 천공작업 등이 진행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의 소음측정 결과 78dB(A) 측정되어 방음벽 재설치 처분을 한 점, 그 후에도 74dB(A) 내지 79dB(A)이 측정되어 방음벽 보완설치 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의 초과를 인정<sup>38)</sup>하였다.

34) 2007가합28104 사건의 원고는 약 970명이었는데, 감정비로 20,000,000원이 청구되었다. 한편, 위 사건은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35)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나94125 판결.

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 30. 선고 2007가합95 판결.

37)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36901)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7가합103906 판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99414)에서 화



, 실측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한 감정결과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2009 가합58758 판결에 의하여** 약 13개월 동안 터파기 공사를 위해 천공기, 브레이커 등이 사용된 사안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사결과 59dB(A) 내지 84dB(A), 법원 감정 결과 51dB(A) 내지 91dB(A)의 소음이 도달하였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 74dB(A) 이 측정된 바 있는 점, 터파기공사의 발생 소음은 연속적, 반복적인 충격소음이므로 더 큰 불쾌감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의 초과를 인정 하였다.<sup>39)</sup> 공사가 주간(07:00-18:00)에 이루어진 경우 당시 소음기준에 의해 발생소음이 70dB(A) 이하이어야 하는 바, 다수의 사안이 소음 수인한도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5개월-13개월 정도 장기간에 걸쳐 천공기, 브레이커 등의 파쇄기계에 의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행정청에 의해 발령된 행정처분의 시행여부도 수인한도 판정시 고려되었다.

(2)

피해자는 공사소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 ) 높은 소음도의 건설기계가 투입되었을 것

공사 현장에는 장애물을 파쇄하기 위하여 ‘브레이커, 천공기, 향타기’ 등 소음이 높은 건설기계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건설기계에 의한 소음은 i) 소음진동규제법 등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점<sup>40)</sup>, ii) 위 기계들은 90dB(A) 이상의 높은 소음(향타기

확정되었다.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가합58758 판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15603)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40)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10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4]에서는 건설기계 중 브레이커, 천공기, 향타기 등을 ‘소음발생건설기계’로 분류하고 있고, 위 법 제44조, 위 규칙 제59조, [별표 19]에서는 소음발생건설기계의 경우 해당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붙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22조, 위 규칙 제21조, [별표 9]에서는 향타기, 천공기, 브레이커 등을 5일 이상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93.1dB(A), 95.5dB(A), 브레이커 95.7dB(A)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sup>41)</sup>, iii) 일 반인이 가장 시끄럽다고 느끼는 건설기계도 항타기, 천공기, 브레이커 순으로 알려져 있는 점<sup>42)</sup> 등을 고려한 것이다.

( ) 수인한도 초과 발생빈도 및 지속시간이 상당하였을 것

공사소음이 수인한도 초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업의 횟수, 1회 작업시의 지속 시간, 1일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생활이익의 보호 또한 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수인한도 초과소음의 도달거리 이내에 거주할 것

공사소음이 수인한도 초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일정 정도의 소음도가 예측될 수 있는 거리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소음진동규제법 소정의 규제 기준<sup>43)</sup>을 참조한 것으로, 소음의 거리 감쇠 특성을 고려할 때, 항타기, 천공기, 브레이커를 사용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 현장으로부터의 일정거리 이내인 곳이면 족하다<sup>44)</sup>. 그러나 공사소음을 일으킨 자는 가설방음벽 등이 소음원, 수음점과의 상대 적인 수평 및 수직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충분한 삽입손실<sup>45)</sup>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

41) ,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 2003.

42) 김재수, 건설소음·진동의 기초 이론과 영향,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제7권 제4호, 1997; 환경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6. 12.

43)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수음자의 위치에서 아침, 저녁(05:00 ~ 07:00, 18:00 ~ 22:00)에는 60dB 이하, 주간(07:00 ~ 18:00)에는 65dB 이하, 야간(22:00 ~ 05:00)에는 50dB 이하(2008. 12. 31.까지는 각 65dB, 70dB, 55dB)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넘는 경우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 별표는 2009. 1. 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08. 12. 31.까지는 주간 70dB이 기준이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4) 다만, 거리감쇠 요인 이외의 요인(기상 조건,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의 장애물)이 있으면 위 추단이 불가능하므로, 위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도달이 예측된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5) '삽입손실'은 방음벽 설치 전후의 소음도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① 회절감쇠치(방음벽이 설치됨으로써 방음벽이 없는 경우에 비해 경로차(A + B - d) 만큼 추가적인 거리감쇠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방음벽이 높을수록, 음원과 방음벽 사이의 거리 및 방음벽과 수음점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회절감쇠치가 증가하게 된다)와 ② 투과손실치(방음벽 자체의 차음성능에 의하여 감쇠되는 것을 의미한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소음원과 수음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을 증명하거나, 당해 방음벽 등을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상당 부분 소음을 저감시켰음을 증명하면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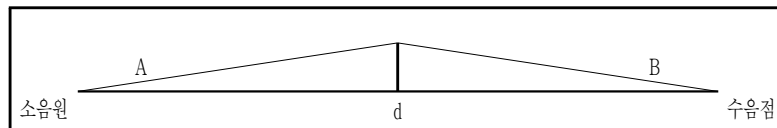
위 판결들에 의해서 일상적인 소음보다 이례적인 소음이, 정상소음보다 충격소음<sup>46)</sup>이, 일회적인 소음보다 연속적·반복적인 소음이 더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소음이 일반적으로 거리에 따라 감소하는 점 등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증명의 정도를 다소 완화시켜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증명책임이나 증명방법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2005다9760 판결에 의하면 단지 거주지로부터 7.6m 내지 52.3m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2년간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등을 일으킨 사실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하였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sup>47)</sup> 충분한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인한도 초과소음의 도달거리 이내에 거주한다는 사실 이외에 천공기, 브레이커 등의 파쇄기계에 의한 소음원의 발생소음이 수인한도 초과소음의 발생빈도 및 지속시간의 상당 정도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3)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



46) , 공사장환경분쟁사건 소음·진동도 산출방법 개선연구, 2007. 충격 소음은 소리의 세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지속 시간이 짧은 소음을 말한다.

4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판결.

실무상 확립된 기준은 없고<sup>48)</sup>, 일반적으로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하였던 요소들, 즉 소음의 정도, 공사 기간, 행정법규 위반 여부 및 시정조치의 실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사의 규모와 문제가 되는 건설기계의 종류, 대수 및 그로 인하여 인정될 수 있는 소음의 크기와 태양, 공사기간과 소가 제기되기 전후의 원·피고측의 태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는 한편, 공사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닐뿐더러 원고들 역시 공사에서 비롯되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까지는 수인하여야 하는 점,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과정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점 및 소음 발생을 이유로 하는 여타 유형의 사건의 실무처리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08가합72566 판결**은 6개월 동안 68dB(A) 정도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고려하여 손해액 월 40,000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170명에 대하여 합계 37,000,000원을 인정하였다.<sup>49)</sup> 같은 법원 **2008가합128261 판결**에서는 6개월 동안 65dB(A) 이상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고려하여 월 40,000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약

48) , 배상액현실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010. 10., 32면 이하 참조. 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재결 시에 참조하는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

( : 천원)

	0-5dB(A) ( )	5-10dB(A)	10-15dB(A)	15-20dB(A)	20-25dB(A)	25dB(A) 이상
7일 이내	50	80	130	200	300	400
15일 이내	70	130	220	330	450	570
1월 이내	80	170	300	430	580	720
3월 이내	155	300	460	630	780	960
6월 이내	240	400	570	740	900	1070
1년 이내	340	510	680	840	1010	1180
2년 이내	455	610	780	950	1110	1280
3년 이내	510	680	840	1010	1180	1340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72566 판결.

1,000 대하여 합계 117,787,518원이었다.<sup>50)</sup> 같은 법원 **2009 43503 판결**은 4년 이상 73dB(A)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약 월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를 산정하였다. 손해액 최대 2,500,000원까지 84명에 대하여 합계 70,193,946원을 인정하였다.<sup>51)</sup>

한편 공사시에 높은 소음을 유발하는 공정은 공사 초반에 기초공사에 집중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대부분 공정이 끝나게 되어 피해를 유발시킨 실제 소음도 측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소음도 측정을 위해 필요한 감정비용이 상당하여 정밀한 감정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가합28104 판결**에서 원고는 약 970명이었는데, 소음감정비로 20,000,000원이 청구되어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위의 최근 판례에서 보듯이 손해배상기준액 등을 참고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일정정도를 초과하여 6개월에서 4년 정도 상당한 기간 지속되면 피해자 1인당 월 4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산정하여 배상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화해를 권고하여 종결시키는 경우도 많다.

#### (4)

최근 판례들은 공사소음의 크기가 클수록, 피해 기간이 길수록 손해배상액을 높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 손해배상액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산정기준이나 다른 공사소음사건에 대한 판결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당사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6개월 정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월 50,000원으로 계산하여 1인당 300,000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피해를 위로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50) 2010. 1. 20. 선고 2008가합128261 판결.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가합43503 판결.

## 2.

## (1)

## ( ) 위법성 판단기준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하고 있다.<sup>52)</sup> 그리고 그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에 관해서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sup>53)</sup>고 하고 있다.

## (나) 증명책임

도로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한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그의 거주지에 상당한 크기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 (다) 증명방법 및 정도

가해자의 도로소음에 대한 피해자의 증명방법은 도로소음의 생활이익의 침해 여부를 실제 소음도 측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도로소음의 경우 그 주거지 인근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교차하여 설치되어 있다면 도로소음이 수음점까지 도달하기까지 소음이 중복될 수 있어서 그 소음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정밀한 감정을 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52)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등 참조.

5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

(2)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용되려면 i) 법적 보호이익은 생활이익이어야 하며, ii) 이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존재하고, iii) 그 침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 ) 생활이익 여부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우선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한다. 그 침해적 요소를 영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외형적 결함 내지 불비함이 있는 경우인 물적 하자와의 물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영조물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가 타인에게 위해를 미칠 경우인 기능적 하자<sup>53</sup>로 구별한다. 만약 도로에서 소음이 유발되는 경우와 같은 기능적 하자<sup>54</sup>와 관련하여 생활이익 형성 전에 기능적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정도의 기능적 하자가 유지된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기능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생활이익의 침해

이처럼 생활이익이 형성되기 전에 존재하던 기능적 하자를 전제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으나 이 후 생활이익의 침해강도가 높아진 경우 그 변화를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새로운 기능적 하자<sup>55</sup>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이익 침해가 i) 통상 예측 가능한 자연스러운 변화인 경우, ii) 특정한 주체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작용인 경우, iii) 그로 인한 불편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써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는 피해자인 거주민들이 증명해야 한다.

\_\_\_\_\_ **군산지원 2008가합1301 판결**에서 주민들이 거주를 시작한 당시보다 소음이 현저히 증가하여 자신들이 향유하던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sup>54</sup>하였다. 즉 거주 주민은 거

전후를 비교하여 거주 전 보다 거주 후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이익의 침해되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 수인한도의 초과

한편 도로소음으로 인한 이 생활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2008가합8407 판결<sup>55)</sup>에서도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무렵의 소음도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거나, 소음이 조금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한다면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sup>56)</sup>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나75466 판결에 의하면 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소음도가 주간 65dB(A), 야간 55dB(A)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하였다.<sup>57)</sup> 한편 대법원 2004다37904 판결에 의하면 도로소음 기준인 65dB(A)를 초과하여 1일 평균 소음도가 66dB(A)에서 78dB(A)인 점 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하였고<sup>58)</sup>, 대법원 2008다9358 판결에 의하면 야간 소음도가 65dB(A)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소정의 소음기준인 55dB(A)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07나2000 판결에 의하면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5층 이하 실외 65dB(A), 6층 이상 실내 45dB(A) 초과할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안에서는 이를 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sup>59)</sup>

54) 군산지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301 판결.

55) 위 사안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의 설치·관리주체와 아파트 시행사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54,153,960원을 지급하고 방음대책비용을 분담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한 바 있었다.

5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8가합8407 판결.

57)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58)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59) 1심: 수원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4가합86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나



요건 검토 시 바로 도로소음의 수인한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이미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시끄러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 경우 침해적 요소의 발생을 전후하여 생활이익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와 조용한 지역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도로가 설치되어 시끄러운 지역이 된 경우 생활이익이 악화된 경우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즉 도로가 있는 지역에 주거시설이 신축되거나 기존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 도로가 건설되는 경우 생활이익의 변화에 따른 침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3)

**2004다37904 판결**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 인근 부천시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착공 후 빌라 부지를 매도하여 빌라가 신축된 점, 1일 평균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인 65dB(A)를 초과한 66dB(A)에서 78dB(A)인 점, 속도 제한 요구 등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하였다고 판시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거주민들에게 도로 소음 정도에 따라 200,000원 내지 3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sup>60)</sup>

(4) 소결

위의 판례에 의하면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에서 대체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서 측정되는 소음도가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이 되고 있고,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등의 요소를 부수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판례에서 보듯이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소음도 판단의 행정기준을 어느 법의 소음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일부 판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소음기준인 주간 65dB(A), 야간 55dB(A)<sup>61)</sup>을, 일부

<sup>2000</sup> . 당사자들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0)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거주지 소음 정도에 따라 200,000원 내지 3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 및 65dB(A) 이상의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인정하였다.

62)에서는 주택법상의 소음기준인 65dB(A), 실내 45dB(A)<sup>63)</sup>을 적용하고 있다<sup>64)</sup>. 비록 심급은 달라하지만 동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단지 소음판단기준을 주간소음기준을 적용하느냐 실내소음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V.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수인한도 초과여부는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의 횟수, 지속시간, 소음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른 소음감쇠,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의 장애물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자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하면 공사소음을 일으킨 자는 면책이 되기 위해서 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임을 항변하여야 한다.

도로소음도 판단시에 도로소음의 측정시기와 방법 그리고 횟수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측정시기는 차량통행량이 많아 소음이 심한 퇴근시간대와 같은 일부 특정시간대에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는 목적물 분양을 했을 뿐이므로 도로소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그 주택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소음과 관련해서 그 소음은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한편 법원은

61)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도로변 지역 소음환경 기준

62) 서울고등법원 2007. 12. 5. 선고 2007나2000 판결.

63) 주택법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실외 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그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는 소음·진동규제법 소정의 규제지역 내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인 경우는 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64) 한편, 소음·진동규제법 제26, 27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인정되어 특별시장 등이 지정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 내의 주거지역의 소음한도가 주간 68dB(A), 야간 58dB(A)인 점도 참고할 만하다.

입주민들이 입주 당시에 도로소음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위험의 정도를 어느 정도 초과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고 인근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있는 경우에 도달한 소음의 중복도를 수인한도 판단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한 공사소음 피해배상의 경우 도로소음 피해배상보다 높은 배상액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공사소음과 달리 도로소음은 도로가 공익 내지 공공시설로서 일반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수인한도를 달리 보고 있다. 한편 공사 또는 도로소음의 경우 피해 배상액 산정시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그 배상액을 다소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석시간대는 절기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과 일치하므로 수면이나 휴식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조석시간 대에 공사진행이 증명되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3. 10. 31. 심사일 : 2013. 11. 18. 게재확정일 : 2013. 11. 28.

- , “항공기소음관련 민사소송의 제문제”, 『환경소송의 제문제(이홍훈 대법관 퇴임기념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1.
- 국립환경연구원,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 2003.
- 박창현,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제7집, 1997.
- 신태섭, 「분쟁조정사건 소송결과분석(2010년 상반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0.
- 양근철, 「환경분쟁조정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1. 3.
- 이강원, “공해배상소송에서의 수인한도론과 공용관련 하자”,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3권, 2004.
- 이승우, “법원의 배상책임결정사유와 재정결정방향”, 『환경법연구』 제34권 제1호, 2012.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1년도 환경분쟁조정-제도개선 및 우수사례발표 자료」, 2011. 11. 23.
- 한지형, 「법원 환경전담재판부 처리사건의 최근 동향과 판결내용분석 -일조·소음 사건을 중심으로-」 환경부, 2011.
- 홍준형, “환경분쟁 재정절차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3권 제1호, 2011.
- 加藤一郎,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 『現代法 ジャーナル』創刊号, 1972.
-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岩波書店, 1968. 8.
- 牛山積, “公害無過失責任立法の問題點-法案要綱の問題點”, 『公害裁判の展開と法理論』, 日本評論社, 1976.
- 野村好弘,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故意·過失および違法性”, 岩波書店, 1968. 8.
- 淡路剛久, 「公害賠償の理論」, 有斐閣, 1978.
- 澤井裕, 「公害の私法的研究」, 一粒社, 1969.
- 奥田昌道 外編, 「民法學(6)」, 有斐閣, 1975.

## Zusammenfassung]

### Die Schadensersatz wegen der Lärmimmission

Lee, Sengwoo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Die Feststellung des Ausmaßes der Lärmimmission erfolgt in der Regel durch Messung des Schalldrucks, der mit einem willkürlich gewählten Schalldruck verglichen wird und zu dem sogenannten Schalldruckpegel führt, ausgedrückt in Dezibel-Werten(dB). Die Lärmimmissionswerte orientieren sich am Charakter des von der Immission betroffenen Whongebietes. Diese Abstufung rechtfertigt sich daraus, daß die subjektiv empfundene Lärmbelastung von der Einstellung zur jeweils vorhandenen Lärmquelle abhängig ist.

Die Lärmimmissionswerte stellen allgemeine Erfahrungssätze dar und sind wegen ihrer Ausrichtung auf nachbarschaftlichen Ausgleich eher zu hoch als zu niedrig angesetzt. Der Gericht hat daher die Anerkennung der durch die Immissionswerte festgelegten Grenzen dahin eingeschränkt, daß auch Immissionen im Bereich unterhalb der Richtwerte wegen ihrer besonderen Lästigkeit im Einzelfall eine wesentliche Beeinträchtigung darstellen können.

Bei Überschreiten der dort angegebenen Lärmimmissionswerte ist in jedem Fall eine wesentliche Beeinträchtigung anzunehmen. Das Gesetz hat trotz Festsetzung von Lärmschutzbereichen, Regelung der Erstattung von Aufwendungen für Lärmschutzmaßnahmen die nachbarrechtlichen Beziehungen nicht abschließend geregelt. Der zur Abgrenzung der Schutzzonen im Lärmschutzbereich festgesetzte Dauerschallpegel gibt ebenso wie die Immissionswerte der Lärm hinsichtlich anderer Geräuschimmissionen nur einen Anhaltspunkt, nicht jedoch einen endgültigen Maßstab dafür, ob eine Beeinträchtigung wesentlich ist oder als noch zumutbare Belästigung hingenommen werden muß. Im Bereich unterhalb der Richtwerte sind die entwickelten Beurteilungsmaßstäbe anzuwenden.

제어 , 소음수치, 수인한도, 판단기준, 손해배상책임

Key Words Lärmimmission, Lärmimmissionswerte, Duldungsgrenze, Beurteilungsmaßstäbe,  
Schadensersatzhaftung